

장기면 제2016- 6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기간 까지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소매인구분	상호	영업소위치	신고자	폐업 일자	사유	비고
일반	정천휴게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1리 319-5	오상분	2016. 6.22	담배소매업 폐업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6. 6. 22 ~ 2016. 6. 28
- . 공고장소 : 장기면사무소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 . 접수장소 : 장기면사무소 산업담당 (☎054-270-6679)
-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장기면사무소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 장소 : 이면참조
 - 우선지정대상자일 경우 : 이면 참조
- . 업무처리 절차
 -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 나.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 기타 의문사항은 장기면사무소 (☎ 054-270-66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 22.

장 기 면 장